

# 「死刑廢止에 관한 特別法」 立法促求 決議文



결 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참 가 자 대학교수회 총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사형폐지위원회  
불교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인덕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위 각단체 회원 일동

## 목 차

1. 인사의 말씀	.....	2
2.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촉구 결의문	.....	3~16
3.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안)	.....	17~19
(참고)		
1. 대회사	.....	20~25
(사형폐지특별법입법촉구대회)		
2. 발제 강연	.....	26~28
(사형폐지특별법입법촉구대회)		
3. 신문스크랩	.....	29~42

## 인사의 말씀

다사다난했던 1999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 천년을 향한 길목에서  
귀하의 존체금안하시고 만사여의 협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새 천년을 평화의 세월로 맞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10일 인권선언기념일에 저희 한국 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유지들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 회의실에 모여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사형폐지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별첨 위 결의문과 위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동봉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1999년이 저물기 전에 위 사형폐지특별법이 통과되어 새해에는 사형 없는 평화로운 새 천년의 첫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2.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이상혁 을림

# 결의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함)

인류사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제 이론적 논쟁의 시대를 보내고 실현의 시대가 되었다.

국제연합이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했던 1989년 당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79개국이었고 존치한 국가는 101개국이었다.

그러나 1999년 6월 4일 러시아의 사형제도 폐지로 현재 사형 폐지국은 106개국이 되었고 존치국은 불과 89개국으로 감축되어 그 수가 역전되었고 앞으로 새천년에는 인류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아래로 사형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1999년 광복절에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사형수를 감형하였던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 또는 1999년년말 임시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새 천년이 되기 전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망하며 또 촉구한다.

우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원과 특별법 입법촉구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은 새천년을 20여일 앞두고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조류에서 특히 낙후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208회 정기국회 또는 1999년년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정부는** 현재 50여명에 이르는 사형수와 수많은 그들의 가족 친지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형의 집행을 받을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사로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형수를 연내에 감형해 줄 것을 청원한다.

**3) 사법부는**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추세를 인식하여 비록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문화적인 **사형 선고를 자제**해 줄 것을 청원한다.

**4)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선진각국이 여론의 고조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으로 폐지되었고 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목표가 달성 될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결의한다.

1999년12월10일 인권선언기념일에  
**사형폐지특별법입법촉구 결의 대회 참석자 일동**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이 상 혁 외 195명

(사폐협연락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9 우성쁘띠오피스텔 9층  
긴급구조 전화 : 599-9413(吾救救-九死一生) Fax : 737-3111  
중앙우체국 사서함 4100번

# 死刑廢止 特別法案

議 案

發議年月日：1999. 11.

番 號

發 議 者：柳 在 乾 議員

外 人

##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生命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한 사람의 生命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엄숙한 것으로 尊嚴한 인간존재의 근원임. 이와 같은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死刑은 刑罰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刑罰로, 인간의 尊嚴과 價値의 전제가 되는 生命權을 침해하는 것이며, 死刑이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刑罰이고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라고 할 것임.

또한 死刑廢止國과 死刑存置國에서 死刑에 해당하는 重犯罪 발생률을 비교해 볼 때도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威嚇的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1999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105개의 국가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하였고 연간 2-3개국 국가가 이를 폐지하고

있어서 사형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것임.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형폐지의 세계적 대세에 발 맞추어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하여 21세기가 시작하는 새천년에는 획기적인 인권존중·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임.

이에 刑罰로서의 死刑을 영구히 폐지하고 종전 사형의 형벌로 규정하였던 부분을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고자 함.

## 死刑廢止特別法案

第1條(目的) 이 法은 死刑의 廢止를 目的으로 한다.

第2條(刑法 等의 死刑 規定의 削除) 刑法 第41條第1號 · 第66條 및 刑事訴訟法 第463條 내지 第469條를 削除한다.

第3條(死刑부분의 效力 상실) 刑法, 軍刑法, 國家保安法, 大麻管理法, 瘡藥類不法去來防止에 관한 特例法, 瘡藥法, 文化財保護法, 保健犯罪園束에 관한特別措置法, 性暴力犯罪의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 原子力法, 臟器등移植에 관한法律, 戰鬪警察隊設置法,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法律,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 韓國造幣公社法, 航空機運航安全法, 航空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및 化學武器의禁止를 위한特定化學物質의 製造 · 輸出入規制등에 관한法律 등에서 刑罰로서 死刑을 規定하고 있는 부분은 效力を 상실한다. 다만, 刑法 第93條中 “死刑”은 “無期懲役”으로 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死刑의 確定判決을 받고 그 執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者는 無期懲役의 確定判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대회사> 새 천년을 사형 폐지로 맞자

한상범 (한국법학 교수회 명예회장)

### 누가 왜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가

세계의 인권운동단체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당면의 숙원 사업에는 고문폐지와 양심수의 석방 이외에 사형 폐지가 들어 있다. 고문이 인류문명의 수치이고 현대의 야만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정치탄압으로서 가두어 박해하는 양심수 박해나 형벌로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 마찬가지로 문명의 수치이고 야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형 폐지를 인권단체나 양식있는 인사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사형 폐지에 대해 가장 체질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독재정권이고 독재자들이다. 독재 유지의 수단으로서 사형이 없으면 당장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얼마전에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낸 한승현 변호사는 재야시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수필 한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사시절에 공안검사를 한 경역의 한승현 변호사가 빨갱이나 빨갱이 편을 들리 만무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승현 변호사를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박해를 가한 것은 사형폐지의 주장이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먹혀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남을 탄압하는 부정한 권력은 항상 국민들의 올바른 눈뜸,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각성을 두려워 한다.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백 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사형이란 제도로 실제로 사형시키는 숫자보다 그 제도가 위압을 가하는 공포분위기와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독재권력은 필요로 했던 것이다.

결국 사형제도가 형벌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형벌제도가 지닌 목적과 방법에 대한 겸허한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때문에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하는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이 점을 힘주어 말해두고 싶다. 법의 이념은 정의라고 할 때에 사람이 실행하는 정의란 사람에 대한 애착과 사람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겸허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톨스토이의 사형 폐지론은 아주 유명하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감히 목숨을 법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가 한 그의 절규를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인간적 성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하에서 경도대학 형법 교수인 전직 판사 다끼가와 유끼도끼(瀧川幸辰)이 톨스토이의 사형폐지론을 소재로 강연을 했을 때에도 일본 군국주의 권력은 크게 화내고 한편으로 겁을 집어먹어서 그를 교수직에서 추방했다. 유명한 1930년대 중반의 경도대학 다끼가와 사건이다.

### 왜 사형제도가 상식론의 이름으로 세를 떨치나?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나 일반 시정인의 상식으로 사형제도를 주제로 말하면 사형 제도 존치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도 그러한

시정의 상식론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국민의 법률감정이나 법제에 대한 인식에서 사형을 긍정한다고 하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런 면도 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 그 사회적 배경, 특히 그 법문화의 실상을 살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법제하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관료의 군임이 일상화되고 사형제도로서 위협받는 일상에서 살아 왔었다. 해방과 건국이후에도 일제 형법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었다(1948년 헌법 부칙 경과조치). 우리 손으로 형법을 만들어 공포시행한 것이 1954년이다. 당시 형법을 만들던 시기는 6·25전쟁당시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및 반국가적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조되고 전쟁의 살벌한 분위기는 사형제도같은 엄벌대응을 당연시 했다. 거기다가 당시에 패전전의 일본 형법 가안을 주로 참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형법이므로 세계 어느나라 형법 못지않게 사형 조항이 많은 형법이 되었다.

그리고 세속의·상식론으로 나쁜 놈은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히고 독재하에서 사회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법률만능주의적 형사정책은 결국 엄벌주의로 귀결될수 밖에 없었다. 형벌이란 것이 쉽게 부과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정권은 출범당시 사형집행도 많이 했고 사형죄목도 늘렸다. 특별가중처벌법제도로 일정액수 이상은 사형으로 다스리게 해 본보기로 몇 사람을 처형하곤 대다수 전과자를 인심쓰듯 사면으로 풀어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겐 집요하게 사형을 통치의 도구로 이용했다. 결국 사형을 필요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독재정권의 사형의 정치적 이용에 동조하는 결과로 말려들게 되는 것이었다. 물론 사형존치론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독재에 이름게 할 의도는 털끝만치도 없다고 펄쩍 뛸 것이다.

## 사형 폐지는 문명과 역사흐름의 추세

독일헌법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헌법에 정하지 않았어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 내지 일부 폐지 또는 사실상 사문화시킨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1950년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사형제도는 문명국가의 일반적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형제도는 폐지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1960년대 사형합헌판결은 이 일본판결의 엉성한 법리와 이유를 그대로 베꼈었다. 그래서 나는 1980년대 대법원 판결 법리 전반에서 문제가 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점도 꼬집었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판결에서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표현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는데, 그 틀린점까지도 복제하는 것은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 각 나라의 사형폐지와 역사의 대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그 법률적 보장에 대한 구체적 제도화가 시도되는 나찌즘과 일제 군국주의의 만행을 인류가 체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제5조는 비인도적 형벌을 금지할 것을 정했다. 그 이후 그러한 인도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실천한 것은 독일연방기본법 제102조의 사형폐지조항이다.

1983년 유럽인권위원회의 제6의정서는 사형폐지를 정했다. 다만 예외로 전시 비상사태하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미국인권회의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폐지토록 한 것은 일대 진보라고 하겠다.

여기서 사형제도를 본격적으로 폐기하기 시작한 영국의 예를 보자. 1957년 영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폭 삭감했다. 1965년에는 5년 경과후 사형의 전면 폐지를 정했다. 다만 1973년에 화기 폭탄에 의한 살인이나 경찰관이나 교도관에 대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여기서 미국의 예를 보면 연방과 50개 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복잡하다. 미국에서 폐만판결(1972년)에서 사형의 위헌성이 5 대 4로 판결되었다. 미국의 연방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정하고 있다. 1974년 형법은 공중납치살인이나 군형법에서 간첩죄와 도망죄에 대해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법에 저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사형을 인정하고 사형집행 전에 최고법원의 재심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형 폐지운동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형의 대상이 되는 자가 대개 흑인 등 인종차별문제와 하층민인 빈곤 무식 계층이란 점에 있다. 이것은 사회적 불공평을 통한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 침해이기 때문이다.

### 사형은 흉악범죄에 대한 대안인가?

특히 사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민심의 시점이 [지존파]라는 살인강도 사체소각 유기의 흉악범죄의 발생이 있을 시점이다. 사람들은 분개하고 흥분해서 흉악 악질 범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그러므로써 범행방지의 대책이 된다고 단순히 생각한다. 사형으로 범죄를 통제할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면 사형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사형존치론자는 반문한다. 이에 대해 사형 폐지론자 쪽에서는 그 대안을 제시할 책임도 있다. 영미의 보통법 제도처럼 구금형에서 30년 50년 --- 장기형을 실제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법률이다. 무기형도 감형하면 20년이 되고, 20년의 감형조치는 또 몇 년이 되어 결국 얼마 있다가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할 때에 옹보감정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사회격리의 효과도 거둘수 없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력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일단 사형폐지 쪽으로 납득이 가게 논리를 전개시킬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의 실례를 검토해서 실례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왜 문명된 선진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오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치를 들어서 알려야 할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 특히 흉악범의 대책은 엄벌주의 형사제도만으로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정책, 사회전반의 환경의 개선과 우리의 형사대책의 개선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세상으로 가는 노력속에서 사형제도가 필요없게 되는 대안과 여건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바로 그래서 사형제도는 없애야 한다

(1) 사람 목숨은 한번 주어지는 존귀한 것 --- 무엇보다 생명권의 존엄성을 말해야 한다. 종교상의 입장에서나 그렇지 않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든 누구에게나 한번 주어진 목숨이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권력기관에서 전쟁상태같은 예외적 특수상황이 아닌한 사람목숨의 단절조치에는 최대한으로 자기 억제를 해야 한다. 비록 국민적 합의라는 형식을 취하는 법률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점은 숙고되어야 한다.

(2) 오판으로 사형된 사람은 어떻게 ? --- 재판은 사람이 법률에 따라 하

는 것이므로 항상 오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잘못 재판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다시 목숨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 아무리 발달되고 치밀한 법률제도하에서도 오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수 없다. 그렇다면 사형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그에 대처한 격리 구금 조치가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1920년대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대한 공포심리로 사코-빈제티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으로 처형한 것을 20세기 후반에 미국 정부는 사과하고 있다. 그들이 그동안 악마적인 위험인물로 매도당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른 나라에서 잘못된 재판에 의한 사형이 얼마나 있는가? 이 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사람이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로서 사람의 목숨을 빼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3) 반대파 제거용으로 이용된 사형제도 --- 정적을 법률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여 영원히 제거하는 독재나 사형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정적을 무기력화 또는 말살하는 음모가 항상 있을수 있다. 정치적 암살의 방법으로 사형제도의 악용은 독재권력이 이용해 온 것은 상식이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미국인권회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치범과 양심수에 대한 사형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4) 사형제도는 범죄방지책인가? --- 사형으로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무기형인 자유박탈의 형벌제도가 영미법의 방식을 참고로 해서 무기수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수 있게 한다면 구태여 사형이 아니라고 하여도 범인에게 사형 이상으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이를 참고하여 사형존치의 필요이유를 제거시킬수 있다.

영국의 라오넬 퍁스 경이 의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적한 바를 보면 살인범은 살인으로 어떻게 처벌당하게 되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긴장상태속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 일부는 자기는 범행에서 잡히지 않고 빠져 나갈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많은 형사전문가들은 사형제도의 존치와 범죄행위(살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5) 속죄와 응보감정상 사형은 필요한가? --- 사람을 죽인 죄를 저지른 범인은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 속죄의 필요성은 바드시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보복감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응보적 형벌의 연장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동해보복(타리오)감정이 피해자 유족뿐만아니고,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논자에게 강하다. 그러한 감정을 억제시키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복과 응보는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으로 범죄를 방지하는것도 아니고 범죄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결과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를 끼쳐서 범죄인을 개선시킬순 없다. 어떤 면에서 구태여 그 이유를 찾으면 그것도 일부 역할과 기능은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사형으로 목숨을 끊어야만 할까 하는 의문은 씻겨지지 않는다.

(6) 국민대중의 법감정 --- 사형폐지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는 일반 대중의 법감정이다. 전시같은 특이한 분위기에서 이면 몰라도 정상적 사회분위기에서도 사형제도가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는 이유는 세속의 상식적 응보론과 응징의 필요성의 감정이다. 사실 악질적 흉악 범인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하는 격렬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발전과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정의 상식론을 앞서 나가는 것이다. 특히 선진 입법은 보통 평균인의 법감정을 훨씬 앞서 나간다. 우리가 근대적 가족법이나 자본주의적 거래관

계에서 제조물책임제도나 사용자의 재해보상 제도같은 법률제도는 대다수 시정의 상식인의 견지에 처음부터 선듯 정확하게 그 법리의 취지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이 법률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생활속에서 계몽과 납득을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우리가 근대법을 수용 = 계수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었다.

### 사형을 폐지 할 경우에 대비해

사형 폐지에 의문을 가지고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살인을 한 범죄인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르고도 살아있을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법감정상의 불만이다. 그러한 생각이 속죄나 응보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점에 대한 참을성있는 설득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그러면 살인범도 사형으로 벌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이 최고의 법정향이 될 것이인데 솔직하게 그래서 될수 있나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군형법에 예외를 두고 한편 민간인의 신분에서 저질은 범죄에도 일부 범죄를 영국처럼 한정해서 사형의 일부 존속을 한시적으로 시행할수 있다.

그리고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인에 대해서 간생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비한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형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살인범이 다시 자유인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는 현행제도의 감형과 사면의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면 사형 폐지론자가 천진한 현실과 유리된 이상론자가 아닌 현실에 발을 부치고 있는 실제론자라는 것을 알려서 사형폐지로 가는 길이 순탄해 질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현재 청원 제출하는 사형폐지에 대한 법률안은 국화에서 좀더 보완될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사건이다. 나의 기본 입장은 일용 사형제도의 폐지에 있다. 이 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현실적 타협이나 절충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절진적으로 폐지를 향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 것이다. 모두가 아니면 무라고 하는 단선논리로 나아가기에는 벽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이다.

### 사형 제도가 없는 새 천년의 의미

톨스토이가 순수한 심정에서 통탄해 마지않은 사형제도의 역사를 냉정하게 돌아보자. 문명속의 비문명이고 반문명이 아닌가? 사형제도의 폐지는 좀더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납득이 가는 면이 많이 있다.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갈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 성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인권을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적 성실성의 회복이다. 이 인간적 성실성의 회복은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의 추구의 보장이란 것으로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 혁명의 독립선언과 인권선언에서 강조되어 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해방과 독립이래 전쟁을 겪고 독재정권하의 냉전기류속에서 숨가쁘게 고된 삶을 이어왔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 생활양식을 되찾으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존엄성과 가치의 존중이란 법이념을 바르게 알고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순진한 바보 정도로 대접받기 쉽지만 정말 바보가 누구인가를 알때가 되었다. 인간존중의 정의가 없는 사회는 무법이다. 인간 존중이란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이다. 악인의 생명 존중은 예외이다라고 할지 모른다. 악인도 인간인 한 최소한의 위치는 인정하는 인간에 대한

애착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지 않는한 우리는 미움과 상호 불신의 수렁에서 헤어 날수 없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새 천년은 무엇보다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어야 한다. 21세기라고 해서 장미빛 꿈의 미래만이 아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며 정보 기술혁명에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변동을 가져 오는 새천년에 남과 함께 공존할줄 알고 협조할줄 아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려면 생명을 존중하는 수준의 인권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인권 한국의 기틀을 세워 나가자.

새 천년은 사형폐지로 맞자.

끝으로 새삼스러운 말씀같지만, 우리사회여론이 사형폐지 쪽으로 어느때보다 여론이 기울고 있고 여기에 뜻을 모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럽고 기쁜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발의한 의원님들이나, 뜻을 함께 하는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 안내]

인권과 사형 폐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에게 안내 책자를 권해 드립니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한상범,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길잡이>>, 사람생각.

한상범 - 남궁은 - 박성호 - 이철호, <<인권수첩>>, 현암사.

다수 국회의원들이 14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사형폐지 특별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인권사에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률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로서의 사형과 사형판결 및 집행의 방법을 삭제하고 (안 제2조), 형법 각칙, 군형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등에서 극형인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되, 사형 단일형으로 된 형법 제93조는 무기징역으로 형을 수정토록 하였다. (안 제3조). 그 밖에도 부칙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전 사형확정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에게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부칙 제2조)

## II.

물론 사형존폐론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사형폐지론의 논거로는

첫째, 사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존중 및 생명권 박탈하는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할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에도 반한다.

둘째, 사형은 응보사상에 입각하여 범죄에 대한 분노를 표시 할 뿐 범죄인의 개선과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셋째,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능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통하여 살인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넷째, 사형은 오판을 할 경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다섯째, 사형은 통상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범죄의 억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사형폐지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범죄의 발생건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검증된다. 특히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인의 경우 범행시 사형의 위험을 의식하지 않는다.

여섯째, 범죄원인은 범인의 악성 내지 반사회성에도 있지만, 사회환경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형은 모든 범죄 원인을 오직 범죄인에게만 돌리려는 불합리한 형벌이다.

일곱째, 사형은 범죄인의 죄 값을 넘어서 범죄인의 가족·친지나 범죄인과 종래 부터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온 많은 이웃들에게도 생명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잔혹성을 지니고 있다.

여덟째, 사형은 종종 인종 및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차별식으로 가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 등이다.

#### 이에 비해 사형존치론의 논거로는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흉악범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다.

둘째, 형벌의 본질이 응보인 이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해자는 사회의 도덕적 반응의 표현으로서 사형은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셋째, 사형제도는 일반인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는 것 등이다.

### III.

사형제도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 보장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응보사고의 잔재에 불과하다. 사형으로 범죄진압을 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민주헌법 질서와 이념과 일치할 수 없는 사고나, 1994년 미국연방대법원의 사형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해리 블랙먼(Harry Blackmun) 판사(1970-1994년 미연방대법원 판사 역임)가 “형벌은 자의성, 차별, 변덕과 오류의 잔재들로 얹혀 있고, 특히 판결에 의한 생사여탈에는 인종적 편견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나는 금후로 더 이상 사형기구의 서툰 수리공 노릇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형 없는 형법문화와 사형 없는 사회의 지평이 멀지만은 않다는 느낌이다.

2005. 2. 보

1999. 12. 6

... 쇠우.

# 死刑 폐지 특별법 제정

## 의원 75명 서명 "내일 국회 제출키로"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여야 의원 75명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들은 추가서명을 받아 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형법 등에 명시돼 있는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죄수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법의원들은 5일 "1백5개국이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형벌인 사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를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형에 사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死刑制 폐지안 국회제출  
與野의원 92명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여야 의원 92명은 7일 사형제(死刑制)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등의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또 이미 이 법의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죄수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1999. 12. 6. 조선일보  
/李貞錄 기자

(한국어) 1999. 12. 7

# 사·형 수 무기장/역 감·형 주진

국민회의 '밀레니엄 사면안'  
IMF형 경제사법  
사면·복권조처도

표단속법 위반자 등 '아이엠에프형·  
경제사법' 가운데 형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은 사면·복권  
조처를, 수감중인 사람은 특별감형  
또는 가석방 조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6일 형이 확정된 사행  
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을  
포함한 '밀레니엄 대사면' 방안을  
마련했다.

유선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이날 "새 천년을 앞둔 사면임을 감  
안해 죄목과 관계없이 사형이 확정  
된 사람들을 무기로 감형하는 방안  
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부도가 난 부정수

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경미한  
신용불량자의 제재조치 해제를  
검토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  
의하고, 외환위기 이후 부도 등으  
로 어려움을 겪은 27개 건설회사,  
8천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교부  
의 제재 해제 조처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품위생법, 건축법, 도  
로교통법 위반자 등 생계형 행정  
사법에 대한 사면·복권 조처와 뇌

물죄를 제외한 공무원·공기업 종  
사자에 대한 징계 사면조처도 요  
청했다.

이와 함께 소지난 8·15특사 때  
이 되지 못한 공안사법 30여명의 특  
별사면 조치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법 중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폭 희대 등도 요청하  
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인권위가 마련  
한 이런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조만  
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뒤 김대  
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국  
민회의의 방안에 따르면 밀레니엄  
사면·복권 조처의 수혜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한겨례 12/8

## 밀레니엄 사면에서 고려할 점

여당인 국민회의가 최근 '밀레니엄 대사면'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방안을 보면, 아이엠에프형 경제사법과 생계형 행정사법, 지난 8·15 특사 때 빠진 공안사법, 그리고 모범수 등 수백만명에게 사면이나 복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질이 가벼운 신용불량자나 환란으로 부도 따위의 어려움을 겪은 건설회사와 건축사가 받은 제재조치의 해제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0년을 맞아 국민적 대화합과 결속을 다져 희망찬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미래지향적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30여명을 두기장역으로 감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터에, 여야 의원 100여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읍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달 말 단행될 사면이 애초의 취지대로 성공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장기 수를 비롯한 양심수나 구속 노동자들을 이번 사면에 대목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세기에도 '인권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과거의 지나치거나 잘못된 사법처리는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로 부정부패나 선거 사법과 고문 따위의 반인륜적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절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패 공직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청기고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형기도 마치기 전에 사면되어 활개치고 다니는 골은 참으로 보기에 역겹다. 나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사면권 행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보여 주어야 한다. 선거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사법을 흐지부지 처분하면서 정치 개혁을 부르짖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정의, 나아가서는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사면권의 낭용이라는 비판이 여러차례 제기돼 웃음을 유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48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사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직하다. 아무쪼록 이번 사면이 진정한 화합 속에서 폭넓은 참여와 새로운 각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정설수설

“아曲折 12월 9일

### 사형 ‘필요악’ 인가



사람의 목숨은 신성하고 한번 끊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중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과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혐벌을 내릴 수 있으나고 한다. 또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겁내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통계분석도 내세운다. 이른바 위하력(威嚇力)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판(誤判)에 의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 제도 때문에 ‘정치적 살인’이 나온다는 이유도 듦다.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의 원 등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7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냈다. 최고형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하고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판결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형이 필요하다는 측도 만족 않다. 범죄 억제 효과는 명히 증진형이나 무기징역보다 월등하다는 반박이다. 거기에는 통학법의 재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오픈은 어떤 형도 벌에도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편다.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또겁다. 최근 유엔에서 사형 폐지론을 내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존치론을 평는 아시아·중동국가

의 외교적 대결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EU측은 철레 호주 캐나다 등 70여개국을 포함하고, 거기에 맞서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중동 70여개 나라가 동조세력 모으기에 열을 올렸다. 결국 세 불리를 의식한 EU가 막판에 결의안을 철회,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나라 같아도 사형이 있는 주는 38곳 뿐이다. 어쨌든 18세기 이후 대두된 사형폐지론은 날로 힘을 얻어 왔다. 이제는 사형을 없앤 나라가 106개국, 사형을 시키는 나라는 89개 뿐이라고 사형폐지운동협회(회장 이상혁 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법안이 어떻게 걸말지어문든 사형은 구시대적인 ‘옹보형’이 되어 가는 느낌이다.

〈김종식 논설위원〉  
searskim@donga.com

## 사형 폐지운동

지난 50년 6월 28일 새벽,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3일만인 이날 한강 인도교가 우리 군에 의해 폭파됐다. 엄청난 인명 희생이 났고 “폭파를 6~8시간 늦추었어도 무리가 없었다”는 비관도 제기됐다. 채널덕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라 폭파를 지휘한 공병감 최참식 대령은 결국 군사 재판에 회부돼 총살형을 당했다.

세월이 한참 흐른 64년, 최대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당시 인민군 전차는 한참 멀리 있었는데 관측부대에서 전차가 온다며 잘못 알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재심 판결로 최대령의 명예는 회복됐다. 그러나 한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의 목숨은 원상회복 될 수 없었다.

사형 폐지론의 논거 중 한가지가 바로 이 오판이다. 물론 사형 폐지론에는 오판의 문제보다 훨씬 큰 사상적 배경이 있다. 고대 바빌론의 함부라비 법전이나 고조선(古朝鮮)의 8조법금 등 보복법을 기원으로 오랫동안 많은 나라가 사형제를 두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죽여서는 안된다’는 인권 존중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또 원래 많은 종교는 ‘큰 짜를 지은 인간아라도 죽기보다는 참인간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는 것’이 최상의 지향점이라 가르쳐왔다.

사형제도는 77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반대선언과 89년 유엔의 사형폐지조약으로 전기를 맞았다. 현재 사형이 없는 나라는 150개국으로 남은 90개국보다 많아졌다. 우리나라 는 63년 대법원이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96년에도 현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 가운데 건 국후 지금까지 모두 91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천주교·개신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10년 전부터는 한국 사형폐지운동협회가 가세해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해왔다. 새천년을 앞두고 때마침 여야 의원 100여명이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는 내용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사형폐지론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조선일보 1999. 12. 6

## '사형제도 없애자' 크게 늘어

### ■■■ 여론조사 ■■■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속'을 약간 더 지지하고 있지만, 5년 전에 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 하자는 견해가 훨씬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일 갤럽 국제조사기구 (Gallup International)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 1500명을 포함한 전세계 52개국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와 범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

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 (50%)이 '반대' (43%)보다 약간 많았다. 하지만 지난 94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이 70%, '반대'가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형제도를 폐지 하자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전세계 52개국 평균도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53%)과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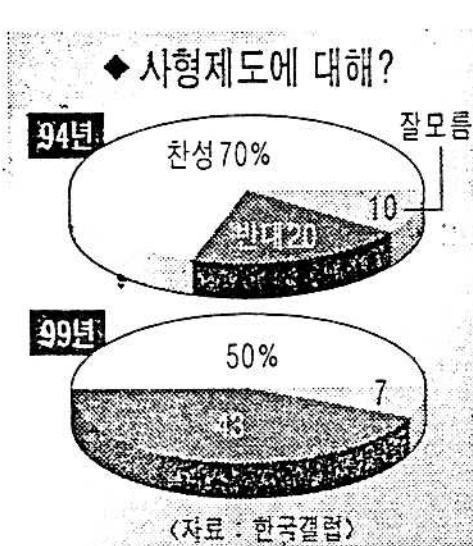
(38%)가 한국과 비슷했다. 지난 달 유엔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유럽 중남미 국가들과 아시아 중동 국가들의 찬반이 맞섰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유럽과 중남미 국민들은 '폐지', 아시아와 중동, 북미, 아프리카 국민들은 '존속' 하자는 견해가 더 많아서, 자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했다.

한편, '정부가 범죄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70%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잘 대처한다'는 28%에 머물렀다. 세계

인 평균도 자국 정부의 범죄대처에 대한 만족은 32%에 그쳤으며, 우리 국민의 만족도는 52개국 중에서 23위였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일간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5%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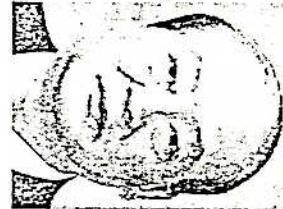
/洪永林기자·ylhong@chosun.com



사령제도 폐지해야

10

李相赫  
변호사  
한국사형폐지  
운동협의회장



이터 정확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지난 6월 4일 러시아가 사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행폐지국이 1백 6개국, 사행존치국이 88개국으로 폐지국의 수가 더 많아, 세 천년에 들어가면 사행제도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사행존치국의 이론적 근기는 단지 국민의 밤감정에 기술된다거나 정치적·사회적 현실로 미루를 때 시기상조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시기상조론의 근거 중 하나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과 북한의 대남 도발을 지적하는 인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명예인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의 폐지는 일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형제도가 평화통일의 저해요인이 될지는 몰라도 축진적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행제도란 역사적으로 인류사회에 깊이 뿐만 아니라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예수는 긴음한 여지를 앞에 두고 그녀를 잡아온 군중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지를 돌로 치라”고 터이 르셨다.

사회적 상처 치유보단  
원한 관계 깊어질 뿐  
범죄 억지 효과 적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형(死刑)제도의 폐지론과 존치론 논쟁이 제연되고 있다. 원래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형사법학의 정체학 분야 또는 법론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 역사와 뿐만 아니라 매우 깊은 관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사형제도로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사행이므로 비단 법학자뿐 아니라 신학자·철학자·정치학자·문학자·사회학자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이 폐지 또는 존치를 주장했었다. 기령 라시아의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등 폐지론자들의 면모는 우리에게도 낯익다. 이를 예로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정치적·사회적 격동기에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통찰했고 그 과정에서 생애를 지내면서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을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의 사형폐지론은 토성공론이거나 인정론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다. 사형제도가 일반적으로 인식과 있는 것처럼 죄악 범죄에 대한 위하(慰藉力)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실증 연구 결과 밝혀졌고,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릇 존립 기반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설로 굳어져 있다. 앞서 말자는 사형제도의 폐지론과 존치론 논쟁이 세인 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폐지론과 사기상조론의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

들이가면 사형제도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사형존치국의 이론적 근거는 단지 국민의 법감정에 가속화되거나 정치적·사회적 현실로 미뤄볼 때 시기상조일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난 10년간 사형폐지운동을 추진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일은 알만한 정도의 입장에 있는 인사가 "우리 사회에 죽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며 농반진 반으로 항의할 때었다.

김정직으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적 정의감으로 '죽일 사람' 살릴 사람'을 가리다면 언제까지 사람 이 사형이라면 이를 아래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6·25전쟁으로 공산군 절령 하에 살았을 때 '인민재판'이라 이름으로 많은 인재들이 무고하게 처형당한 고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특히 정치적·사회적 혼란기에 국민의 법감정이란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근대에 있어서도 수많은 우리의 선구적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사형이 진행되지 않

는 일대 용단이 필요하다. 인류 최고(最高)의 백이라는 험무리비 법전이나 구약 성서에도 이미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 나오고 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등해보복(同害報復) 사상으로 당연히 '살인자는 사(死)'라는 규범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에는 탈리오 사상으로는 사회적 원만관계만 깊어질 뿐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회·문화적으로도 흉흉화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시형제도를 쪽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중동·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 군사독재국이나 지개발국기에 집중돼 있다. 필자는 시형폐지론은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특히 낙후된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하면서 시형폐지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정기국회 폐회를 며칠 앞 두고 유제진(柳在乾)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시형폐지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게 됐다.

다만 국회의 운영일정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필요불급하다'며 거절적으로 폐기돼 버리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풀 실효기(勿失好機)'라고, 필자는 이번 회기내에 이 역사적인 법이 원만하게 성립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 死刑制 폐지론

2004년 12월

사형제도 폐지론을 선구적으로 제창한 사람은 18세기 이탈리아의 시상가 이자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였다. 그는 1764년에 간행한 저서 '법과 형벌'에서 '사회계약론'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금적 죄는 권리만 유임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후 학문적이나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사형제도를 없애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오하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를 늘리거나 사형 당하는 사람들의 수자를 더욱 늘린 나라들이 많았다. 영국이 좋은 예이다. 19세기 초에 이를 시험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는 무려 2백30가지로 늘었다. 이유로나 무를 베거나 소매치기, 심지어 접시와 사과에도 사형선고를 받았다. 1801년에는 스물 한 개를 훔친 13세 소년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10세가 얄던 아린이들이 살인죄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시소한 범죄를 저질러 처형된 에도 많았다.

나치 독일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주위에 떠는 아이들을 위해 헬웃을 훔친 사내, 담배 6갑을 훔친 우편원 등이 끌려온 채로 처형됐다. 이런 사례들은 물론 형법상의 시험이라기보다 '비아성적인 살인'이라 해야 마땅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세기되는 사형제 폐지론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리의 황포를 막아보자는 데만 목표를 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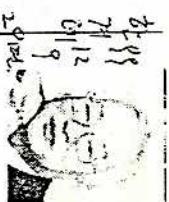
국가가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 소외계층에만 적용되는 등 난공명해하는 것, 오관(誤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이 오늘날 사형제 폐지론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사형제 존중론도 만만치 않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는식의 '옹보의 법도'에서부터 국악무도한 범인들은 인간社会에 서 영원히 죽리해야 한다는 김정논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남세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주는 장기 구금보다 'ಹಲօ'에 끝낼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1백 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90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리에서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광화롭고 인정된 사회기 질환들을 때는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내놓았다. 엊그제 여야 국회의원 92명이 사형제 폐지안을 제출했다. 현재의 3년 전 '단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때를이다.



1%

'사형폐지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이삼혁 한국시민 폐지운동협의회장은 10  
일 오후 2시 서울 지방변호사회 회관 대  
회실에서 '사형폐지특별법 입법 족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사형 폐지 법안 수면위로

2004.12.9

여야 의원 91명 서명 제출  
공청회 등 토론 축발할듯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형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사형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진 국민화의 의원 등 여야 의원 91명은 지난 7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형법 등에 있는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시행전 경과규정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전원 무기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교원정년 62살’ 버틸 수 있을까

2004.12.9

자민련 “63살” 법안 배고

한나리당 “63~65살” 확답

“총선 탓 계획 도루목” 비판

자민련에 이어 한나리당이 교원 정년을 혼동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거나 65살로 확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로 당론을 정한 민족 우리도 63~65살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리고 밝혔다. 김희준 산임 교통위원장은 교원 정년을 65살로 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공적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산임 인사처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김남기 의원

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리고 밝혔다. 김희준 산임 교통위원장은 교원 정년을 65살로 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공적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산임 인사처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김남기 의원

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리고 밝혔다. 김희준 산임 교통위원장은 교원 정년을 65살로 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공적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산임 인사처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김남기 의원

법안제출을 주도한 유 의원은 “현재 나의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20세 기를 마감하고 새 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인권과 생명존의 새 문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사형폐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제출에 는 국민회의 63명, 한나리당 11명, 자유민권 등 모두 94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임 체정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그 취지는 인정이나 사형폐지논의 등은 감안할 때 관법위한 여론수렴, 법무부와의 조율 등을 먼저 거쳐야 함”이라며,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국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다”고 밝혔다. 정경화 한나리당 정체부의장도 “사형폐지논의는 전 민족의 핵심으로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여론수렴과 법제화 검토 등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법안제출 의 주도로 교원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경화 한나리당 정체부의장은 8일 제3차 주요당지자회의에서 “그동안 교육계에서 교원의 정년을 65살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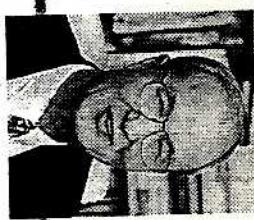
위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나, 현재로서는 교원 정년연장 문제를 검토할 계기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 phikim@hani.co.kr

인천회 기자 shan@hani.co.kr

## 오늘·무슨 특별한 일이

정 달 영 칼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라고 달력에 적혀 있다. 12월 10일, 바로 오늘이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억하는 날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것은, 마치 요즘 지물어가는 한 천 해를 두고 한 세기가 지문지거나 한 천 년기가 지문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대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실이고렇기도 하다. 달력 한장을 넘기는 무심한 세월보내기로 치면 바로 오늘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든, 바로 요즘이 새 밀레니엄의 대전이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무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세상 일인 듯하다. 특히 밀레니엄을 두고는 온 세상이 온갖 의미와 기념 물과 행사와 작품과 헤세와 과열로 떠들썩하다. 하다못해 2000년 첫 해동이 둔해인에서 맞이하려는 자동차의 신문들은 일찌부터 정해 주고 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들뜸 부여하고 기념물을 세우고 행사를 벌이는 일은 나쁠 것이 없다. 다만 현실을 괴롭거나 근거없이 회망을 쟁취하는 하세는 지재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로서 미망할 일을 하고 국민은 국민으로로서 미망해 할 일을 하되 광성심으로써 해내는 성숙한 모습이라야 이를 닦다.

세계인권선언일인 것은 우연이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의 번화사회관에서는 「사행폐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촉구」 열린다.

주최는 천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기독교교협의회, 불교조계종 등의 인권관련 위원회들이고 주관은 한 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① 국회는 현재 의원발의로 추진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 ② 정부는 현재 50여명에 이르는 미집행 사형수를 연내 김첨히 줄 것 ③ 시법부는 시대 역행적이고 반문화적인 사형선고를 자제해 줄 것 ④ 정치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사행제도를 폐지 등을 촉구하게 된다.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사행폐지특별법안이 주제되는 것과, 정부의 밀레니엄 대사면 계획안에 현재의 사행수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으로의 김첨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특별한」 모임이 급히 열리게 된 까닭이다.

지난 6월 4일 러시아가 혈류함으로써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국은 모두 106 개국으로 늘었다고 한다. 사형제도 존 치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서 폐지국이 훨씬 더 많아졌다. 「사형 제도에 관한 논쟁은 이제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결이 아니라 폐지론과 시기 상조론의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무겁 한 시립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는 인간존중의 인식이 보편화 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현재 미국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그 전부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과 군사독재국, 저개발국에 집중돼 있다. 「인권국가」가 나리의 명예로 되어있는 우리로서는 뜻밖지 않은 일이고, 또 없지 못할 이유도 없다. 더욱 나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하교량은 행사

들 중에서 「사형제도 폐지-사형수김첨」 만큼 무겁고 소중한 의미를 지난 정신적 이벤트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사형제도를 폐지한 선진국들의 거의 전부가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라기 보다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사실에 교훈이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그 자신의 헌법 교훈에 오 허려 「결단이 어려운 것일까. 대통령의 「절단이나 정직적 리더십이 이어운 대목은 사형제도를 포함한 「인권」관련 현안들에 몰려있음도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해에 테아난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그 대표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엊그제 공동여당끼리의 정체조율에서도 국제 보법문제는 다시 무책임 방기상태로 내던져졌다는 소식이다. 의문시 진상규명이나 인권위원회 설치등의 개혁입법들이 실종된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의 개혁의지에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를테면 정준현선생에게 금관문화훈장이 극절끌어 주시던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의 죽음에 양현 「의문」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음이 상징적이다.

특표나 종신에서의 승리는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IMF체제라는 호기를 다놓쳐 비리고 그나마도 특표체제에 희생·설종되는 개혁의지를 두고 역사에서의 승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생각할 일이다. /본사주필

# 사형제도 폐지해야 하나

5일 여야 의원 70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운동을 펼쳐왔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인

## 한국일보 포럼

간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으며 법의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대측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어 악용악법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폐지



이상혁

한국사형폐지협의회 회장  
변호사

사형폐지론의 이론적 기초는 인권이다. 인간의 생명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권의 실질적 의미는 없다. 아무리 국가권력이라도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인권사상이 그 기초다.

흔히 사형폐지론자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이고 존치론자는 냉엄하게 사실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폐지론자야말로 사회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현실주의자이고 존치론자는 사형제도가 일반인에게 주는 위협 효과만 맹신하는 보수주의자이다.

사형제도의 역사는 아주 길어 함무라비법전, 성서에도 이미 사형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형제 존치국가와 사형제 폐지국가의 중범죄 발생률이 크게 차

### 범죄예방위한 위협효과 미미

### 106개국 이미없애… 폐지 대세

이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사형제의 일반인 위협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사형제의 이론적 기초가 무너졌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도 적어졌다.

유엔이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했던 89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79개국이었고 유지 국가는 101개국이었다. 그러나 올 6월 러시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폐지국이 106개국, 유지국이 89개국으로 그 수가 역전됐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독재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새 천년에는 인류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질 것 같아 확실하다. 문제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폐지하느냐는 전략상의 방법만이 담아있다. 일부에서는 사형제도를 즉시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우선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확정 사형수를 무기형으로 감형한 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국회에 의원 발의된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 존속



심규철

변호사

그동안 학문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온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를 입법차원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與敵罪·형법 93조)뿐이며 그의 범죄는 사형뿐 아니라 자유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법정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형이 법정형의 하나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관이 법형의 동기·잔악성·결과의 중대성 등 제반 사항을 참작, 양형할 때 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여적죄도 형법 55조에 따라 작량감경(酌量減輕)을

### 오판가능성 지적은 본말 전도

### 법감정이 사형원하면 필요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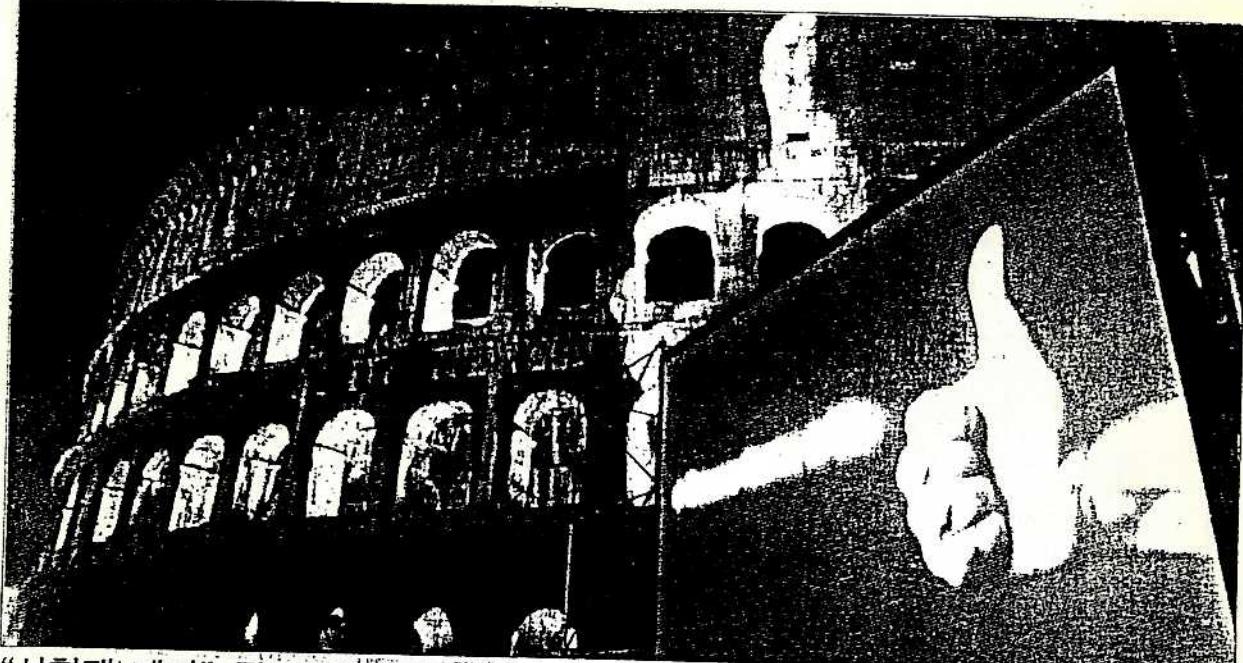
따라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법관이 법죄의 동기나 잔악성 등을 참작해 볼 때 도저히 피고인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 때로 국한되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중에는 자유형에 처해도 좋을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 법관이 오판하여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가 전제로 깔려있다.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의 문제는 상소제도나 재심 등을 통해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 법관도 인간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해 제도의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본 말이 전도된 것이다.

범죄를 심판하는 법관도, 사회의 구성원 절대 다수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것은 사형밖에 없는다는 판단과 법감정을 갖게 된다면 사형 선고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근래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 조심스럽게 사형 부활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동아일보 99.12.14 1면



로마 AFP 연

## “사형제 폐지” 콜로세움의 불빛 시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국제사면위원회 등 세계 인권운동단체들이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12일 간접조명으로 환하게 밝혔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엄지손가락은 로마황제 네로가 ‘살려줘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표시. 인권단체들은 세계 각국 사형수의 형 집행이 면제될 때마다 48시간 동안 황금색 불빛을 밝힐 계획이다.

사형반대 콜로세움 불빛 이탈리아 로마의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이 12일 밤 이탈리아정부와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의 사형제도 반대행사에 맞춰 환하게 불을 밝혔다. 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콜로세움의 불빛이 다시 밝혀진다. 스크린영상은 로마시대 검투사의 목숨을 살려주라는 뜻의 「세운 엄지 손가락」 /로마 AFP=연

## 텔레서베이

## 55% “사형제 유지해야”

한국일보 99.12.10 1면 오피니언

### 반성하는 사형수의 감형

사형제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시민이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7월 하루동안 018사용자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1%의 시민이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했으나 사형제도 폐지 주장도 적지않아 44.9%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10~30대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했으나 40대 이상 만이 폐지(71.4%)가 유지(28.6%)보다 많아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벌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유일하게 폐지(52.2%) 주장을 강하게 편반면 학생이 가장 강경하게 유지(61.9%)

를 주장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60.5%)」가 가장 많았고 「법의 오판이 있을 수 있다(30.7%)」「정치적 악용 가능성성이 있다(8.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54.3%)」「흉악범죄 예방, 재발방지(45.7%)」를 꼽았다. 연령별로 우선순위가 달랐다. 10~30대가 「흉악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많이 꼽은 반면 40대 이상은 「예방, 재발방지」를 더 많이 택했다.

최근 확정사형수를 무기형으로 감형하는 여당의 「뉴 밀레니엄 대사면」안



과 관련, 확정사형수가 자기 반성을 할 경우 감형해주어야 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70.5%의 시민이 찬성했고 29.5%는 반대했다. 역시 40대 이상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아 85.7%를 보였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중앙일보 99.12.14 12면

# 로마 콜로세움 “사형 철폐” 메카로

각국 처형유예 때마다 축하 불빛

**교황청·유엔등서 기획**

[로마 AP·AFP=연합] 고대 로마 시절 죄수들에게 잔인한 사형장으로 활용됐던 로마의 콜로세움에 전세계 사형제도 반대운동의 메카로 변모하게 됐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에서 사형선고의 유예 또는 취소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콜로세움을 비추는 기존의 백색불빛을 금색으로 바꿔 48시간 동안 밝히게 되는 것이다.

이 행사는 유엔·이탈리아·로마시·바티칸 교황청·국제사면위원회·비정부기구 등이 사형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전세계적 사형선고 금지 결의안의 유엔 표결에 맞춰 12일 밤(현지시간) 개막된 이 행사는 내년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데드맨 워킹’으로 유명한 미국인 수녀이자 사형반대운동가 헬렌 프리진을 비롯한 전세계 인권운동 관리자들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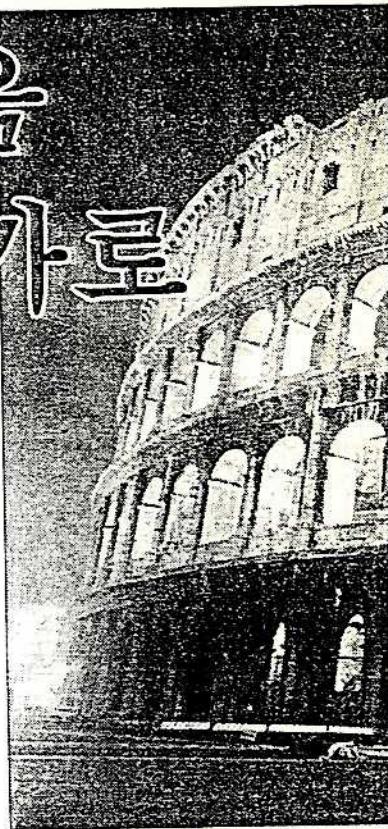
프리진 수녀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대희년(大禧年)인 2000년 한햇동안 만이라도 전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을 멈추기를 기원하자”고 호소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행사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형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가톨릭은 로마에 있는 ‘성 에지디오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행사의 개막식은 ‘데드맨 워킹’ 상영에 이어 로마 황제가 과거 맹수와 싸워 이긴 검투사의 목숨을 살려줄 때의 제스처인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료됐다.

로마 주재

**세계 사형제도  
유지·폐지  
현황**


인권단체들이 로마시대 사형장으로 써온 엄지손가락 스크린. 스크린 불빛은

분류	국가수	주요국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68	영국·캄보디아·호주·폴란드
일반적 범죄에 대해 폐지	14	아스라엘·아르헨티나·피지
사실상 폐지	24	러시아·터키·알바니아
유지	89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

자료=국제사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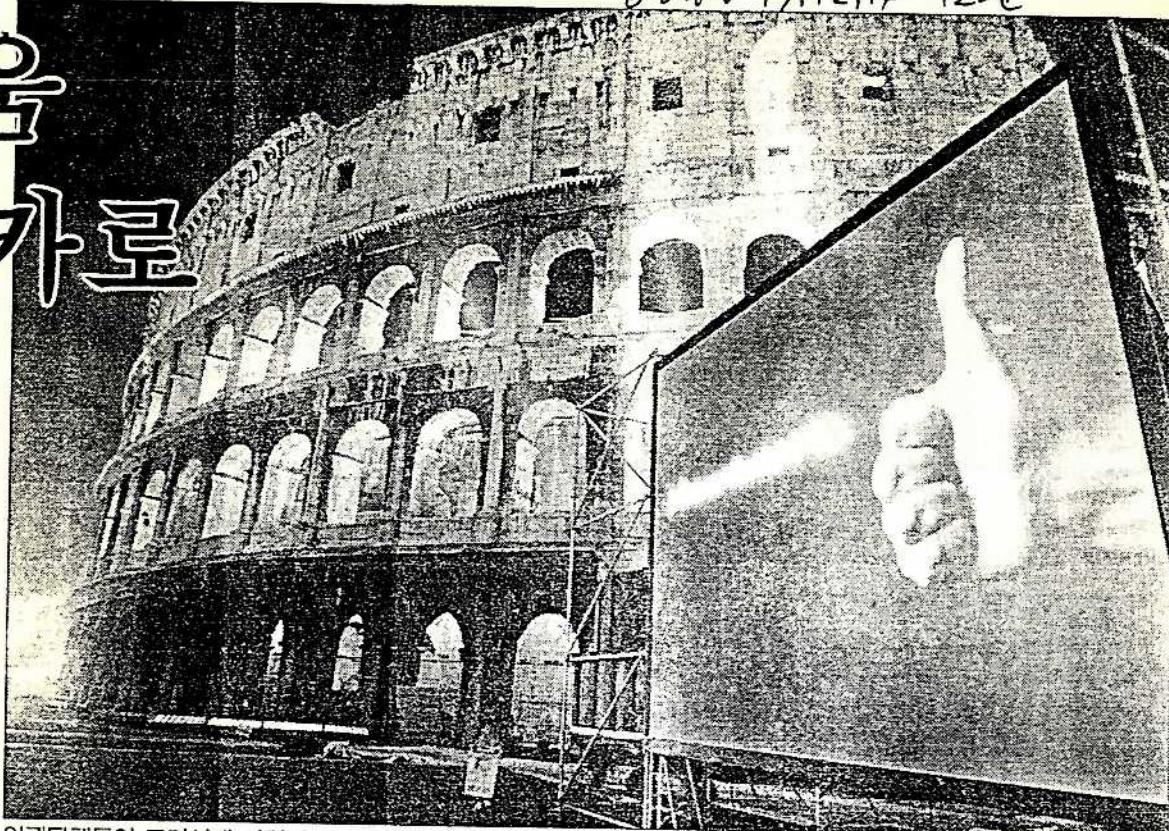
**콜로세움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최대지름 1백88m·높이 45m의 4층짜리 원형극장.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지만 중세 때부터 ‘거대하다’는 뜻의 콜로세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로마시대에는 기독교·노예·검투사 등이 맹수와 싸움을 벌이는 장소로 쓰였다. 맹수를 이기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명 속에 죽어갔기 때문에 사형장 역할을 한 셈이다.

이탈리아는 대다수 서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폐지돼 있다.

[중앙일보] 99.12.14 12면

# 울 카로



인권단체들이 로마시대 사형장으로 쓰인 콜로세움을 사형제도 폐지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11일 콜로세움 앞에 설치한 엄지손가락 스크린. 스크린 불빛은 사형수 형집행이 면제될 때마다 48시간 동안 금색으로 바뀐다.

[로마 AFP=연합]

## 주요국

영국·캄보디아·호주·폴란드

이스라엘·아르헨티나·피지

러시아·터키·알바니아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

자료=국제사면위원회

## 콜로세움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최대지름 1백88m·높이 45m의 4층짜리 원형극장.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지만 중세 때부터 '거대하다'는 뜻의 콜로세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로마시대에는 기독교도·노예·검투사 등이 맹수와 싸움을 벌이는 장소로 쓰였다. 맹수를 이기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명 속에 죽어갔기 때문에 사형장 역할을 한 셈이다.

## 사형 폐지국이 더 많아

## 중동·美등은 '역행'

## 하루 6명 형장이슬로

오랜 역사를 가진 사형제도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폐지되는 추세다.

사형폐지 운동은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내놓은 뒤 본격화됐다. 이후 유엔 및 인권단체들의 활동으로 지난 6월 러시아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없애는 등 매년 2개국 정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현재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백 6개국으로 사형 존치국가(89개국)보다 많다. 이들 1백 6개국 중 14개국은 군법이나 전시(戰時) 등에만 사형을 적용할 수 있고, 24개국은 최근 10년간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

지 않았다.

유럽·오세아니아·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대다수 아시아·아프리카·중동 국가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미국은 72년 사형제도를 폐지 했다가 4년 만에 부활했으며, 현재 38개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올해 들어서만 96명이 처형되는 등 최근 들어 형 집행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미성년자까지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여서 국제사면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톨릭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 최근 여야 의원 91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현상 기자**

&lt;leehs@joongang.co.kr&gt;

## 사형폐지 특별법 입법촉구 결의대회

1999. 12. 10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KNCC) 사형폐지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인권위 ·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주관: 한국사형폐지준동원의회



### “사형제 폐지” 특별법 촉구

이종승기자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사형폐지특별법 입법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형제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99. 12. 10. 동아일보 사회면

사형폐지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